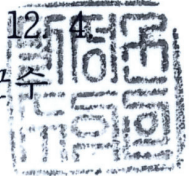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의 안	1900
번 호	

제출일자 : 2020. 12. 4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가.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여 군민이 조례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함.
- 나.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신속·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어려운 한자어 정비

- 양양 → 드높임/ 통리 → 총괄/ 여타 → 그밖의/ 내경 → 안지름/ 미연에 → 사전에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입법예고(2020. 10. 20. ~ 11. 9.) 결과 : 의견 없음
- 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5) 부서합의 : 합의되었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 및 한자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조례를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한자어 등 정비)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 및 한자어를 정비하며,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한자어 등 정비

연번	소관부서	자 치 법 규 명	관련조항	현 행	개 정
1	자치행정과	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	제5조제3호	순화양양	순화나 드높임
2	자치행정과	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	제5조제1항	회무를 통리하고	위원회의 사무 를총괄하고
3	자치행정과	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	제9조제1항	여타	그 밖의
4	자치행정과	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조례	제3조제3항	회무를 통리하고	위원회의 사무 를총괄하고
5	환경과	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	제7조제3호	내경	안지름
6	안전방재과	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	제2조제9호	미연에	사전에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